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06 발의연월일: 2025. 2. 28.

발 의 자:최수진・임이자・구자근

성일종 · 김예지 · 박준태

고동진 · 김장겸 · 조정훈

김재섭 · 이양수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지방세법」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,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원시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며 이후 주택이 분양될 때 수분양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.

그러나 주택건설사업자는 잠정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, 항공기, 선박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 준공 후 미분양 적체 현상, 공사대금 미수금 증가 등 주택건설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사업자의 부담 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 취득하고,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한 경우 사 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의4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4(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) ① 「주택법」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할 목 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업 주체의 해당 주택 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.

- 1.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: 100분의 50
- 2.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: 100분의 100
-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3조의4(주택건설사업자에 대
	한 취득세 감면) ① 「주택
	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
	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
	사용검사일 또는 「건축법」
	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
	터 1년 이내에 분양할 목적으
	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
	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
	업주체의 해당 주택 취득에 따
	라 발생하는 취득세에 다음 각
	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곱
	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.
	1.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주택사
	<u>업: 100분의 50</u>
	2.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
	<u>하는 주택사업: 100분의 100</u>
	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검
	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
	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하
	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
	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
	추징한다.